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6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이헌승·강대식·박성훈

서범수 · 강명구 · 윤상현

송석준 • 박덕흠 • 김성원

박수영 • 한기호 • 김정재

조경태 · 임이자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"판매촉진비용") 등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(이하 "납품업자등")과 약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음.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50%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 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 생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판매촉진행사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,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 납품업자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본문 중 "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"를 "제12조부터 제14조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35조의2제2항 본문 중 "제10조"를 "제10조, 제11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5조(과징금) <u><신 설></u> | 제35조(과징금) ① 공정거래위원 |
| | 회는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 |
| | 지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|
| |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 |
| | 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 |
| | 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 |
| |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|
| |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을 산정 |
| |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|
| |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|
| |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|
|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 | <u>②</u> |
| 항부터 제3항까지, 제7조부터 | |
| 제10조까지, 제11조제1항부터 | 제12조부터 제14 |
| 제4항까지, 제12조부터 제14조 | 조까지 |
| <u>까지</u> , 제14조의2, 제15조, 제15 | |
| 조의2,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| |
| 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 | |
| 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 |
|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| |
|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 | |
|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| l |
| 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을 산 | |

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.

-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,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 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·징수에 관하여는 「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.
- 제3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(생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제7조, <u>제10조</u>, 제1 2조,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 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대규모유

| ·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③ 제1항 및 제2항 |
| |
| |
| |
| |
| |
| |
| 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 |
| |
| |
| |
| |
| 제35조의2(손해배상책임) ① (현 |
| 행과 같음) |
| ② |
| <u>제10</u> 조, 제 <u>1</u> |
| <u>1조</u> |
| |
| |
| |
| |
| |

| 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 | |
| 지 아니하다. | |
| ③・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